

건축물 설계도서의 저작권법상의 권리

The Copyright of Architectural Design Drawing

鄭德薰/종합건축사사무소청전건축
by Cheong, Teok-Hun

I. 서론

1. 저작권법의 연혁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융희 2년(1908)에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 의하여 1908년 8월 16일부터 당시의 일본저작권법을 의용하여 오다가 1910년 8월 29일 합방이후부터는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시행하였고 미군정 및 대한민국정부수립초기까지 그대로 시행하여 오다가 1957년 당시의 일본저작권법을 모델로 하여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몇 차례의 개정작업이 정부와 관련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나 1986년 7월 21일 성립된 한미통상협정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그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률 제3916호)

저작권이란 말은 Copyright라는 말을 일본사람이 번역하여 만든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의용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이라하면 지적·정신적 문화활동으로부터 창작된 지적 산물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학문과 예술에 관한 문화의 보호육성과 그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규범을 말한다.

2. 설계도서의 의의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등을 말하며,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건축물 설계도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저작물 등록부에 미등록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 받을 수 있는 바 설계도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고하며,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유도하고 저작물의 창작을 고무·장려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내지 저작권제도에 관련된다는 이해관계자는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저작자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여 그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저작물의 창작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생활을 하며 보다 나은 저작물을 창작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저작물 이용자이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목적을 추구한다.

셋째, 일반대중이다. 일반대중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보다 높은 문화를 접하는 대신 저작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저작권 제도가 저작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재산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의 보급관점과 기본적인 자연권과 제도적 권리의 보호관점으로서

가.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노동의 산물이므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나.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투자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견해

다. 국가의 문화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
라. 문화의 원상보존과 후세전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
마. 인류문화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저작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고 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저작물 이용자에게 맡기고 최대한의 경쟁을 통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루려는데 있는 것이다. 즉, 저작권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처리를 보호

저작자의 권리에는 복제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 등 저작자의 물리적·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물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이 있다. 즉, 저작자의 재산과 인격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들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 구제수단을 인정해야 한다.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재산상 인격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3)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저작물에 대한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지적·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을 말하며,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하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창작물이어야 한다.

3. 저작물의 예시

- 가.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 나. 음악저작물
- 다. 연구 및 무용·무연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
- 마.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바.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사. 영상저작물
- 아.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

- 가. 의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나. 보호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편집저작물

- 가. 의의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나. 보호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가. 법령
- 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유사한 것
- 다.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가목내지 다목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바.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이 있다.

6.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저작자를 추정하고 있다.

- 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나.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다. 상기와 같은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

7. 공동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제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8.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가. 저작 인격권

저작자의 인격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다음 세가지가 있다.

1) 공표권

공표권이란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하는 권리이다.

2)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4) 성질

가)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며,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이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예외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5) 공동 저작물의 권리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다.

1)복제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2)공연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말한다.

3)방송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말한다.

4)전시권

저작자가 미술저작품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5)배포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말한다.

6)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7)예외규정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 등예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등은 예외적으로 재산권침해를 성립하지 않는다.

8)보호기간

가) 원칙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사망후 공표시 보호기간은 10년 이내일 경우에도 10년간 존속된다.

나)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①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② 예외

- 50년간내에 저작자의 실명도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 50년간내에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 단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
공표한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9) 양도·행사·소멸

가) 양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나) 이용허락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 거래에의 제공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라)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마)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나 질권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바) 저작재산권의 소멸

① 자연소멸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됨

② 법적소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와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소멸된다.

9.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방송사업자가 재산권자와 협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송할 수 있다.

다.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

저작물을 번역·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에 해당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이를 번역·발행할 수 있다.

10. 등록

가. 실명의 등록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나. 등록의 효력

미등록시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이 제한되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다. 등록의 절차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물 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Ⅲ.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의 정지등 청구

저작(著作)권 그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그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명예회복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Ⅳ. 저작권법상의 건축물과 설계도서의 관계

현행 저작권법상 건축물과 설계도서는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으나, 엄격히 구분한다면 저작물에는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에는 건축물로 나누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이 우선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되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로 보아야 되며, 설계도서와 건축물은 각각의 독립된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현행 건축물의 설계계약서(건설부인가:건축 455-19276(1983.9.27)) 제 10조의 규정을 보면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귀속되며 건축주는 본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모방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체육부장관이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등록의 효력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설계도서에 대한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건축사법상 협회에 등록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필한 것으로 본다든가 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재산적 가치가 상향되었을 때 그에 따른 설계기법의 기술이 발전되고 창작된 작품과 신기법은 보호되어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야 하며, 문화적, 예술적 작품은 창작할 수 있는데 대한 보상으로 설계도서에 대한 법적권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협회에 등록된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협회에서는 설계도서 도서관을 마련하여 이를 회원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교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지, 1992.
2. 저작물과 출판권, 황적인/최현호 지, 1990.
3. 한국저작권 판례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 1990.
4. 계간 저작권 92년 겨울호 제20호,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지, 1992.